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신원식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인사법 개정(신설)에 따라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기록에 대해 국방부가 요청하는 경우와 제출 방법, 기한 등을 군인사법시행령에 규정이 필요

* 군인사법 제54조의6 (자료의 요청) 개정 : '23. 10. 31. 공포

제54조의6(자료의 요청)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(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의 동의를 받아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0. 31.]

3. 주요내용

가.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 받은 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해당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,

나.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게 해당 의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의료기록의 내용 및 제출기한을 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생략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종전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30은 제60조의31로 이동하고,
제60조의30(자료의 요청)을 신설한다.

제60조의30 및 제60조의31을 각각 제60조의31 및 제60조의32로 하고, 제60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30(자료의 요청)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“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
2. 전사자등이 고령(高齡)·장애·상해·질병 또는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
3. 전사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의료법」 제17조에 따른 진단서
2.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
3. 「의료법」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
4.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해야 하고,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송부하거나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료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)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	
연 락 처	(02) 748 - 3091